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	

발 명 교 육 의 활 성 화 및 지 원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창양 (산업통상자원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, 발명교육법)」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‘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·관리,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(법 제10조제5항)’의 시행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(지도교사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, 발명교육을 위한 직무연수의 실시 및 이수, 지방자치단체장의 발명교육센터 지원근거 마련)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의 운영 등(안 제9조, 제9조의2)

1)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가 계속해서 발명교육 담당을 희망하면,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맞추어 당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2)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발명교육센터등에 배치된 지도교사는 안정적인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및 발명교육 역량 함양을 위해 1년 이내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함(안 제9조의2, 신설)

나.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근거(제8조)

1) 특허청장의 운영·지원을 규정한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)도 발명교육센터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함께 규정하여, 시도교육청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등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본문에서 “**특허청장은**”을 “**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)은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**행정적**”을 “**행정적·재정적**”으로 한다.

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가 계속해서 발명교육 담당을 희망하면, 당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2(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의 교육·연수 등) ①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발명교육센터등에 배치된 지도교사는 1년 이내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의 교육·연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발명교육센터등에서 발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는 1년 이내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) <u>특허청장은</u> 발명교육센터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·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.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.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.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의2. 발명교육 전문가의 파견 지원 5.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<u>행정적</u> 지원	제8조(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) <u>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)</u>은 ----- ----- 1 ~ 4의2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<u>행정적·재정적</u> --
제9조(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) ① 발명교육센터등에는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,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② 발명교육센터등에는 예산	제9조(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) ① ·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. ③ 발명교육센터등에는 법 제 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지도교사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. <신설>	④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가 계속해서 발명교육 담당을 희망하면, 당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<신설>	제9조의2(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의 교육·연수 등) ①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② 발명교육센터등에 배치된 지도교사는 1년 이내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	
연 락 처	042-481-5187